

朝鮮朝의 혼례음식

김 상 보*

I. 머릿말	III. 조선조의 혼례음식
II. 『儀禮』 「士昏禮」의 혼례음식	IV. 맺음말

I. 머릿말

고려는 신라의 전통을 기초로 하여 토속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초부터 唐制를 모방한 유교식을 도입하여 관혼상제를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중엽 무렵에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관혼상제의 대체적인 윤곽이 불교식과 융합되어 정착되었다.

고려를 계승한 조선왕조는 유교식으로 관제와 문물을 정비하였으며 『朱子家禮』를 기반으로 禮治主義를 장려하여 『가례』가 사회적 규범이 되었다. 士와 大夫를 지배 계층으로 한¹⁾ 조선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혼례음식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해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핵심이다. 『가례』의 중심사상이 된 『의례』 「사혼례」의 혼례음식 부분을 ‘규범’으로 하고, 고려에 이어 계속 이어진 전통적인 부분을 ‘관행’으로 설정하여, 同牢宴과 見舅姑禮에 나타난 혼례음식의 개괄적인 흐름과 상

* 대전보건대학, 식품학

1) 장철수, 『韓國의 冠婚喪祭』(집문당, 1995), 122쪽.

호영향적 요소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조선왕조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고대사회부터 殷·周·春秋戰國·漢·隋·唐·宋·元·明 등 중국문화의 영향을 부단히 받으면서 이어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관행’이라고 보는 문화 역시 구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주·춘추전국·한을 통하여 한반도의 고대사회에는 이미 식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유교문화가 수용되어 있었다.²⁾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혼례의 同牢宴이 이루어지는 飲福 과정에서 共飲·共食이 갖는 의미 및 예물로서 올리는 棗栗과 脰脩脯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결혼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II. 『儀禮』 「士昏禮」의 혼례음식

1. 同牢宴

혼례는 성대하고도 기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士의 혼례는 大夫의 예에 근거하여 6豆 3鼎으로 차려졌다.³⁾ 『의례』 「사혼례」에서의 동뢰연 상차림은(<그림 1>) “天子之豆二十有六, 諸公十有六, 諸侯十有二, 上大夫八, 下大夫六…”⁴⁾에 근거하여 食膳의 그릇 수를 신랑·신부 각각 6豆로 하고,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뼈가 붙어 있는 고기는 왼편에, 토막으로 썬 고기는 오른편에, 밥은 왼편에, 갠은 오른편에, 회와 적은 바깥쪽에, 초장은 손과 가까운 곳에, 파는 끝에, 술과 음료는 오른편에 놓아

2) 金尙寶,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的饗宴」,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19卷 1号(1994).

3) 오강원 역주, 『儀禮』(청계, 2000), 232쪽. 太牢(소·양·돼지)를 갖춘 경우는 大盛饌이며, 小牢(양·돼지)를 갖춘 경우는 연회이다. 大夫가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할 경우에는 特牲과 3(鼎)(腊·豚·魚)을 갖춘다. <그림 1>은 士의 혼례이지만 大夫의 예에 근거하여 차려진 상차림이다. 정(鼎)의 음식은 俎에 담는다. 大夫의 혼례 때는 5정(양·돼지·魚·腊·魚·羊), 天子의 혼례 때는 9정(牛·羊·豚·魚·腊·腸·胃·膚·鮮·魚·鮮·腊)이다. 5정은 小牢, 7정과 9정은 大牢이다. 김상보,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수학사, 1996), 44쪽.

4) 「禮器」, 『禮記』.

올리며(凡進食之禮, 左設右載,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 醢醬處內, 葱溲處末, 酒漿處右),⁵⁾ 음양의 이치에 따라 제사 때 올리는 鼎俎의 총수는 奇數(陽)로 하고, 邊과 豆는 偶數(陰)로 하는데, 邊과 豆에 담은 음식은 水와 土의 산물인 陰性 食物, 조와 정에 담은 음식은 조리한 陽性的 육류로 한다(鼎俎奇而邊豆偶, 陰陽之義也, 籩豆之實, 水土之品也. 不敢用藜味而貴多品, 所以交於神明之義也)⁶⁾는 원칙에 따라 진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의례』 「사혼례」에서의 동뢰연 상차림

5) 「曲禮 上」, 『禮記』.

6) 「郊特性」, 『禮記』.

이는 성의(根本)와 형식(예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禮를 기준으로 하여 마련한 것이다. 天時의 추이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를 가지고, 양성(고기) 음식은 홀수로 담고, 음성(과일과 채소류 등) 음식은 짝수로 담아 신(祖上神)께 올려 신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과 화합하여 만사를 처리함으로써 원활하게 천하를 다스리는데, 예란 천하를 다스려 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⁷⁾ 이러한 내용은 음양오행에 맞추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성의를 다하되, 분수에 맞추고, 제사 이후의 飲福을 통하여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만사가 원활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禮記』에서는 예의 형식을 정할 때 “시세에 맞출 것, 분수에 상응할 것, 예를 행하는 대상에 적합시킬 것, 행례 비용의 정도를 적당히 할 것, 행례자의 신분과 행례의 규모가 균형 조화가 있을 것(禮時爲大, 順次之, 體次之, 宜次之, 稱次之)”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⁸⁾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림 1>의 동퇴연 상차림은 土의 신분에 상응하는, 귀신을 접대하고 飲福을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가장 성의를 다한 상차림일 것이다.

신랑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신부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마주하고 앉아, 각자는 가운데 있는 6斗(陰: 짝수) 3俎(陽: 홀수)의 음식으로 먼저 제사한다. 자리 가까이에 있는 菹(김치)와 醢(젓갈)부터 시작하여 멀리 있는 黍(찰수수)·稷(차조)·胾(胾)·肺(폐)·肫(등뼈)의 순서로 제사한다.

제사한 음식은 폐와 등뼈부터 먹는데 먹기 쉽게 하기 위하여 醢(고기국)과 醬을 사용하고, 三飯⁹⁾으로 끝내는 黍를 먹은 후, 다음과 같이 杯事가 진행된다.

제1잔

입을 청결하게 하고 먹은 음식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신랑·신부에게 권하는 술이다. 신랑·신부는 모두 爵의 술을 제사한 후 마신다. 술을 마시기 전에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豆에 담아 俎에 얹은 술 안주인 肝炙이 제공된다. 이때 간적은 소금을 문혀 흔들어 제사한 후 먹으며, 간적을 먹은 후에

7) 「禮器」, 『禮記』.

8) 「禮器」, 『禮記』.

9) 三飯은 行禮가 밥 먹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세 번 숟가락을 뜬다는 의미이다.

술을 마신다.

제2잔

신랑·신부는 제1잔과 마찬가지로 술을 제사한 후 마신다. 이때의 爵은 제1잔 때 사용했던 작이 아닌 별도의 작이고 술안주로 간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3잔

부부 合體하며 相親하는 의미에서 爵 대신에 罇을 사용한다. 역시 술은 제사한 후 마시며, 술안주로 간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신랑·신부가 罇으로 제3잔을 마시면, 동퇴연 음식은 이웃하는 별도의 房에 다시 차려지고, 이 방에서 신부측 시종인은 동쪽 자리에서 신랑의 饌 나머지를 먹고, 신랑측 시종인은 서쪽 자리에서 신부의 饌 나머지를 먹은 후, 동퇴연 예는 끝이 나게 된다.¹⁰⁾

신랑·신부 두 사람의 결합 내지는 좀더 확대한다면 두 가문의 결합을 위한 절차로 치러지는 동퇴연은 처녀·총각이던 독신의 세계에서 아내·남편·아버지·어머니·며느리·사위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단위 세계로의 이행의 계기를 제공하는 의례 절차이며, 신랑과 신부를 에워싸고 있는 부모는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 속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례이다. 지금까지 젖어 있던 삶의 질서가 동퇴연을 통하여 재생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이행하여 가는 것이다.¹¹⁾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동퇴연 의례 절차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신랑·신부가 차려진 음식을 먼저 신(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후 신이 내려 주신 음식을 飲福하는 절차를 통하여 아내와 남편이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재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신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신과의 共食·共飲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복을 받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의례 끝 부분에서는 신랑측 시종인과 신부측 시종인이 신랑과 신부가 먹다 남긴 음식 나머지를 서로 맞바꾸어 먹는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신랑·신부가 먹다 남긴 음식은 신이 먹다 남긴 음식이기도 하다. 신이 먹다 남긴 음식은 신랑과 신부가 먹고, 신랑과 신부가 먹다 남긴 음식은 맞바꾸어 가족들이 먹고 있는 것이다.¹²⁾ 신과신랑·신부 그리고 그

10) 池田末利 譯註, 『儀禮 I』(東海大學出版會, 1974), 138 ~ 152쪽.

11) 장철수, 앞의 책, 137 ~ 150쪽.

12) 신랑측 시종인과 신부측 시종인은 각각 신랑·신부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들이 공식과 공음을 통하여 일체가 되고 있다.

동뢰연이란 신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의례로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신에게 맹세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며 두 가문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 동뢰연을 구성하고 있는 饌品 가운데 돼지와 술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돼지는 特豚(작은 새끼돼지)이다. 좌우 兩胖으로 나누어 오른쪽 절반은 신랑의 것 나머지 왼쪽 절반은 신부의 것으로 한다.¹³⁾ 신랑과 신부는 돼지를 상징하는 氣의 주체인 허과와 몸의 正體인 등뼈를 제사하여 음복함으로써 함께 牲肉을 먹어 일체가 되며, 같은 신분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동반하여 들어와 함께 牲肉을 먹고 근배로 술을 마시는데, 이 일은 둘이 합체가 되고 같은 신분이 됨으로써 서로 애정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婦至, 婿揖婦以入, 共牢而食, 合卺而醕, 所以合體同尊卑以親之也).¹⁴⁾

무릇 술을 마시는 것은 陽氣를 키우기 위함이며, 肉과 飯을 먹는 것은 陰氣를 키우기 위함이다(凡飲 養陽氣也, 凡食 養陰氣也).¹⁵⁾

牲肉이 陰氣를 키워 신랑과 신부의 몸을 합체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면, 술은 陽氣를 키워 신랑과 신부의 혼을 일체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合卺을 사용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마음(혼)을 일체시키는 매개로 동원하는 것이다. 牲肉(特豚)과 술은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2. 見舅姑禮

『儀禮』가 쓰여졌던 당시에 윗사람을 처음 볼 때의 선물로 大夫는 기러기(鴈), 士는 꿩(雉), 庶人은 거위(鶩), 婦人은 脯·脩¹⁶⁾·대추(棗)·밤(栗)·개암(榛)·탕자

13) 池田末利 譯註, 앞의 책, 146쪽.

14) 「昏義」, 『禮記』.

15) 「郊特牲」, 『禮記』.

(棋) 등을 사용하였다.¹⁷⁾ 동뢰연이 끝나고 다음날 신부가 시부모를 처음 볼 때, 시어머니에게 膾脩脯(생강과 계피가루를 뿌려 길게 쪄낸 말린포), 시아버지에게 棗栗로 예를 올린 것은, 당시 부인의 선물로 사용되던 것이 여러 종류의 과일과 견육류라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조율과 단수포로 규정하여 현구고례를 행한 것은 전기한 바와 같이 棗栗은 음성의 식물이고 膾脩脯는 양성의 식물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화합하는 天時의 법칙에 따라 양인 시아버지에게는 음성의 棗栗을, 음인 시어머니에게는 양성의 단수포를 적용한 것이다.

〈그림 2〉 『의례』 「사혼례」에서의 현구고례 상차림

이상의 음과 양의 적용 외에 각각 선물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기로 한다. 棗는 束가 從으로 두자가 겹쳐 된 것으로 ‘많다’는 것을 뜻하며, 栗은 ‘공손함(謹敬)·단단함(堅)·갓춤(律)’을 의미한다.¹⁸⁾ 시아버지에게 棗栗을 올리는 것은, ‘공손하게 갓

16) 脯란 고기를 얇게 저며 썰어 말린 것을 가리킨다. 「郊特牲」, 『禮記』.
 17) 「曲禮」, 『禮記』. “凡摯, 天子鬯, 諸侯圭, 卿羔, 大夫鴈, 士雉, 庶人之摯匹, 童子委摯而退…婦人之摯, 棋棗脯脩棗栗”
 1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六』(大修館書店, 1986), 294쪽, 394쪽.

추어 진심 어린 마음을 많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殿脩에서 단은 '생강과 계피를 뿌려 말린 고기', 수는 '공경(敬)·따르고 배움(循·習)·노력함(勉)·길이가 김(長)'을 뜻한다.¹⁹⁾ 시어머니에게 단수포를 올리는 것은 '공경하고 노력하여 배우고 익히며 시어머니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부가윗사람(시아버지·시어머니)을 처음 만나는 예를 끝낸 다음, 시부모가 거실에 들어오면 시부모께 孝順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은 새끼돼지(特豚) 한 마리를 올리는데 오른쪽 받은 시아버지에게 왼쪽 받은 시어머니에게 올린다. 다음날, 시부모가 신부를 접대하여 1헌의 술잔을 獻酬 교환하며 이것이 끝나면 시부모는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고, 신부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옴으로써 비로소 신부는 시어머니를 대신하는 지위를 얻게 된다.²⁰⁾ 시집온 신부로 하여금 주인의 계단인 동쪽 계단(동쪽 계단은 주인인 시부모가 이용하는 계단)을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신부에게 婦順의 道를 요구하는 것으로 『예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婦順이란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족과 화합하며 남편의 마음에 들고 동시에 직조 등의 일도 잘 할 뿐 만 아니라, 가정에 저장 양식 및 재화를 견고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신부에게 부순의 덕이 있다면 집안이 화합하고 안정하며 그럼으로써 그 가정은 長久해진다(婦順者, 順於舅姑, 和於室入, 而后當於夫, 以成絲麻布帛之事, 以審守委積蓋藏. 是故婦順備, 而后內和理, 內和理, 而后家可長久也).²¹⁾

결론적으로 『의례』의 「사혼례」는 婦順의 德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의 생산능력을 갖춘 여성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 규범이며, 이 여성의 능력은 동퇴연을 통하여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婦順이 부족할 때 陰事의 처리가 원만하지 않아 월식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에게²²⁾ 陰을 고르게 하여 자연재해를 막는 길은 婦順이 있는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었으며, 자연재해를 막고 농사가 잘되어 가정과 국가

19) 위의 책, 321쪽, 347쪽.

20) 池田末利 譯註, 앞의 책, 163쪽; 「昏義」, 『禮記』.

21) 「昏義」, 『禮記』.

22) 「昏義」, 『禮記』.

를 튼튼히 하는 것은 올바른 결혼 예법과 婦順을 갖춘 여성으로 교육함으로써 완성 되는 것이었다.

III. 조선조의 혼례음식

1. 家禮상의 혼례음식

(1) 同牢宴

부인을 맞아들일 때 소와 말을 納幣하던 부여의 혼속은²³⁾ 고구려와 백제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이후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혼례형태이던 처가살이 혼(婿入婚)은 그 역사가 뿌리깊은 것이다.²⁴⁾ 고구려시대의 혼인은 물론 자유혼이었으나 피로연에 소용되는 ‘이바지’ 용으로, 혼례 때 드는 잔치 비용을 충당시키기 위하여 돼지와 술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외의 폐물을 신부집에 보내는 경우는 수치스러워 했다.²⁵⁾ 이 돼지와 술은 신부집에서의 잔치를 통해 모두 共飲共食하는데 쓰는 “신성한 酒食”이었으며²⁶⁾ 신랑과 신부의 서로 다른 두 집안이 공음공식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는 데 소용이 되는 특별한 식품으로 결혼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

1123년 고려에 다녀간 이후 집필한 서긍의 『高麗圖經』에 귀인이나 선비집안에서는 신부집에 禮幣를 보내고, 서민들은 술과 쌀을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²⁷⁾으로 보아 고구려의 풍속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랑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 전에 신부집에 묵었으며, 신부집에서 신방을 준비한 3일째에 비로소 부부가 同牢宴을 받았고, 이 때 行三坏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동뢰연을 “獨座”라고 했다.²⁸⁾ 이러한 고려의 혼속은 고려 말 정몽주 등이 봉건적 신분제도와 가부장제적

23) 『東夷傳』, 『三國志』.

24) 韓東龜, 『韓國의冠婚葬祭』(國書刊行會, 1974), 87쪽.

25) 『高句麗傳』, 『北史』. “有婚嫁取男女相悅爲之, 男家送猪酒而已.”

26) 韓東龜, 앞의 책, 149쪽.

27) 徐兢, 「雜俗一」, 『宣和奉使高麗圖經』. “貴人仕族婚嫁, 略用嫂幣至民庶, 惟以酒米通好而已.”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행한 일련의 개혁 조치에 따라 당시까지 존속되던 처가살이 혼이 시집살이 혼(嫁入婚)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349년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결혼할 때 북경에서 親迎함으로써,²⁹⁾ 시집살이 혼의 서막은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 말의 일련의 개혁조치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이행되었다.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정권을 더욱 정치사상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의 강화노선에 부합하는 도학적 윤리관을 확립하고, 의례를 정비하였으며, 『朱子家禮』를 근거로 한 시집살이 혼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 행해지던 처가살이 혼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였다.

중종 13년(1513) 유학자 金致雲이 최초로 親迎을 행했지만, 기묘사화(1519) 때 趙光祖(1482 ~ 1519)가 처단된 이후 친영은 폐지되었다.³⁰⁾ 이후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동뢰연을 행한 뒤 다음날 아침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서 시부모에게 현구고례를 행하는 半親迎³¹⁾이 명종(1546 ~ 1567)조에 土民家에서 행해졌는데 16세기 후반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명종조의 半親迎은 관행이 규범을 앞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랑이 신부집에 머물기 시작한 3일 후에 행하던 습쫌禮는 반친영 이후 혼례 당일 치루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부집에서의 잔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명종조 이후 행해진 반친영에서의 혼례 중심 행사는 신부집에서 행해지는 酒宴이었다.

신부집에서의 혼례 연회에 동원되는 음식상에는 초례상이라 부르는 동뢰연상, 동뢰연 이후에 신랑·신부가 받는 큰상(大床),³²⁾ 별도로 신랑·신부가 직접 먹게끔 배려한 입매상(小床, 작은상), 친인척들을 대접하는 주연상 등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납폐 때 함을 진 사람들을 대접하는 주연상 및 封采³³⁾떡 등이 있었다. 이들 상차림의 전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8) 韓東龜, 앞의 책, 151 ~ 152쪽.

29) 『高麗史』, 卷89.

30) 『增補文獻備考』.

31) 『增補文獻備考』.

32) 큰상은 먹지 못하는 상이다. 看卓 또는 눈요기 상이라고도 한다.

33) 納幣儀式을 奉采(封采)라고 한다. 이 때 납폐를 시루떡 위에 올려놓는데 이를 봉채떡·봉치떡이라고 하였다. 이 시루편은 ‘백설기시루편이다. 黃必秀, 『懸吐註解 四禮便覽』(1900).

- *과일과 나물의 그릇 수는 가감이 있음.
- *고족상 안의 음식 배열도는 필자가 작성한 것임.

<그림 3> 1626년 반친영 때 신부집에서의 동퇴연 상차림(『省齋集』)

동퇴연상은 『의례』 「사혼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親迎 이후 신랑집에서 特豚을 중심으로 차린 상차림이었다. 『주자가례』가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조선의 혼속에 『가례』의 「친영」을 끼워 맞춘 결과의 한 예가 반친영 때 신부집에 차려진 동퇴연 상차림일 것이다. <그림 3>은 辛應純(1572 ~ 1636)³⁴⁾이 인조 4년(1626) 4월 반친영으로 치른 차녀 혼인 때의 상황을 기록한 다음과 같은

34) 辛應純의 자호는 省齋이다. 고려 때 貞懿公 鏡이 그의 시조였다. 文玉杓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2 ~ 3쪽.

글을 인용하여 필자가 도식화한 것이다.

신부집에서 방안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의자와 탁자를 동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신랑의 자리는 동쪽에 신부의 자리는 서쪽으로 하였다.
 나물과 과일·술잔·반찬을 보통 의식 때와 같이 차려 놓았다.
 술병은 동쪽자리 뒤(동북쪽으로 사료됨)에 놓았다.
 또 탁자를 술병의 남쪽에 놓고 그 위에 술잔 2개를 합하여 놓았다.
 방구석에 남북으로 각각 손수물 대야·수건·揮巾을 놓았다.
 次(대기소)를 문 밖에 설치하고 장막을 치고 방석을 깔았다...
 신랑이 기러기를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안고 대청 아래에 이르러 북향하여 무릎 꿇고 기러기를 내려 놓았다...
 신랑이 남쪽에서 손을 씻고, 신부는 북쪽에서 손을 씻었다.
 신부가 두 번 절하자 신랑이 한번 절하여 답하였다.
 신부가 또 두 번 절하고 신랑이 또 한번 절하여 답하였다.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자리에 앉았다.
 종자가 술을 따르고 찬을 올렸다.
 신랑과 신부는 술과 醢(마른안주)를 제사하였다.
 종자가 술을 따랐다. 신랑과 신부는 제사하지 않고 마셨으며 안주는 없었다.
 종자가 표주박잔(합근배)을 들어 신랑과 신부에게 나누어 놓고 술을 따랐다.
 신랑과 신부는 제사하지 않고 마셨으며 안주는 없었다.
 신랑이 방밖으로 나가고, 음식을 치워 방밖으로 내 놓았다.
 신랑의 종자가 신부의 남긴 음식을 먹고, 신부의 종자가 신랑의 남긴 음식을 먹었다.³⁵⁾

이상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차림의 주요 찬품은 과일과 나물이었고, 동퇴연에서의 杯事는 술 3잔이었으며, 제1잔은 제사를 지내고 안주와 함께 먹었고, 제2잔·제3잔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안주 없이 마셨는데, 제3잔 쟈에는 합근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실은 형식(술 3잔, 합근배, 제사 등)은 정통 유교식 혼례를 채택하였으나, 내용(상차림)은 옛 풍속대로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35) 위의 책, 124~126쪽, 128쪽.

는 사실이다.

- *과일과 나물의 그릇수는 가감이 있을 수 있음.
- *고족상 안의 음식 배열도는 필자가 작성한 것임.

<그림 4> 친영 때 신랑집에서의 동퇴연 상차림(『증보사례편람』)

<그림 3>이 관행대로 한 상차림이라면, <그림4>와 <그림5>는 혼례의 규범을 제시한 동퇴연 상차림으로, 각각은 친영 때 신랑집에서 차리는 동퇴연 상차림 예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친영 때 신랑집에서의 동퇴연 상차림(『與猶堂全書』)

<그림 4>는 李緯(1680~1746)가 쓴 『四禮便覽』을 증보하여 광무 4년(1900)에 간행한 『增補四禮便覽』의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것이다. 이 책 속에는 신랑집에서의 동퇴연도와 함께 상을 차릴 때의 찬품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도 역시 “과일과 나물을 둘로 나누어 담아 놓는다”라고 적혀 있다. <그림 4>는 이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지만, 그 큰 흐름은 1626년의 <그림 3>과 거의 같다. 『증보사례편람』에는 <그림 4> 이외에 1900년 당시 ‘옛부터 내려온 전통적 혼례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물론 신부집에서 행하던 동퇴연에는 그 상차림 찬품을 대추·밤·食散·子·떡·국수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찬품 외에 국수와 떡이 더 추가되고 있는 셈이다. 『증보사례편람』에서 규범으로 제시한 <그림 4>의 동퇴연 상차림은 『與猶堂全書』 「嘉禮酌儀」에서 규범으로 제시한 <그림 5>의 상차림보다는 관행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與猶堂全書』 제3집에 있는 「가례작의」의 동퇴연 상차림은 『의례』 「사혼례」(<그림 1>)의 동퇴연 상차림을 인용하고 여기에 당시의 풍속을 참작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있다. 『의례』 「사혼례」의 동퇴연 찬품 가운데

데黍와稷을 밥(飯)과 떡(餅)으로,腊을 닭으로 바꾸어 진설하고 있다(<그림 5>). 『의례』 「사혼례」의 아홉 종류 음식을 차리는 예법을 채택한 <그림 5>의 상차림은 어디까지나 규범으로 제시된 것이다.

정약용은 『어유당전서』를 집필할 당시의 풍속에 대하여, 동퇴연 때 술 3잔을 전부 숭쫘杯로 쓰는 점, 동퇴연을 대청에서 하는 점, 부부가 각각 상을 따로 받지 않고 상 하나를 같이하는 점을 지적하고 그대로 채택해도 되는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규범과 관행이 다른 가운데 전개된 조선왕조 시대의 일반 서민들 동퇴연은 혼례날 신부집 문 앞에 松竹(지조 또는 절개의 의미)³⁶⁾을 세우고, 室 또는 대청 아니면 마당에 交拜席을 마련한 다음 밤대추 등의 과일, 술주전자, 술잔 그리고 합근을 진설한 高足床을 한 가운데 놓는데 이것을 동퇴상이라고 하였다. 동퇴상 양 끝에는 몸이 묶여진 닭 두 마리가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에 싸여서 놓여졌다.³⁷⁾

공음공식으로 부부의 결합을 상징하는 동퇴연을 통하여 부부의 결합은 상징화되고 드디어 정식 부부가 된 신랑·신부를 축하하기 위한, 의례의 중심이 되는 향응이 신랑·신부 양가를 연결하고 유대를 강화시키는 목적과 동시에 혼인을 공표하는 목적 아래 열렸다. 이 때는 신랑·신부를 위한 큰상, 신랑의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온 사람인 後行(上客이라고도 한다. 품위가 있고 文才가 있는 사람이 뽑힘)을 대접하기 위한 後行床, 후행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은 待客을 위한 대객상, 신랑과 신부의 접대 역할을 맡은 신랑·신부의 待客(對盤이라고도 한다. 상복중이거나 임신중인 여자는 자격이 없다. 보통 신부 친척 가운데 부귀를 겸비한 사람이 뽑히는 것이 통례임)을 위한 대객상이 향연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림 6>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구한말의 향응으로 보이는 <그림 6>에서는 신랑집에서 34명이 後行으로 왔고, 이를 대접하기 위하여 신부집에서 34명을 선발하여 접대시키고 있으며, 좌석배치는

36) 「禮器」, 『禮記』에는 “竹과 松은 세간에서 경사스러운 것의 대표로서 존중되지만, 그것은 사계를 통하여 대나무가지가 고사되지 않고, 송백잎은 항상 푸르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고 절의가 견고한 것을 상징하여 존중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한편 대나무와 소나무는 불교에서도 상징물로 나타나는데, 대나무는 祝壽, 소나무는 長生樹로서의 속성으로 인하여 장수의 상징물로 되어 있다. 허균,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 2000), 142쪽.

37) 韓東龜, 앞의 책, 204쪽. 한동구는 이 책에서 닭이 암시하는 의미가 자손 번영인지, 고대부터 숭배되어온 拜鷄 사상의 유풍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림 6> 동뢰연을 치른 후 신랑신부가 받는 큰상과 손님접대를 위한 주연상³⁸⁾
38)

<그림 7> <그림 6>의 큰상에 꽂은 조화

38) 張承斗, 「李朝社會の婚姻儀式に就て」, 『朝鮮』, 291 ~ 292(1939).

신랑집에서 온 後行은 동쪽, 후행을 접대하는 대객은 서쪽, 신랑·신부를 접대하는 대객은 북쪽, 신랑·신부는 남쪽에 각각 마주보고 자리를 하고 있어 최하석(남)에 위치한 신랑·신부가 최상석(북)의 신랑·신부 대객을 접대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³⁹⁾ 신랑과 신부가 받은 큰상에는 造花인 목단과 국화가 꽃혀 있어 상차림의 화려함을 짐작케 하고 있다.

正租 때의 서민혼례 기록인 『東廂記』는 당시 큰상의 찬품 구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민혼례라고는 하나 官에서 치른 혼례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혼례와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동상기』에는 다음과 적혀 있다.

모든 일은 끝냄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봉상시의 (熟手 몇 사람을 급히 불러 다 음식을 마련시켰다.

증병·인절미·權母·백설기·송편·卵麵·酸麵·유밀과·홍산자·중박계·다식·양색요화·각색강정·어만두·어채·狗醬·軟鷄濡·어회·육회·양지머리수육·전유아·약과·누름이(訥飲伊)·저육·白肉·잡탕·탕평채·화채·아가위능금·柳杏자두·배·황율·대추·참외·수박 등을 속수가 맡아 내 놓았다.

수과련(繡八蓮)을 꽃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야말로 사또어른 밥상이라, 두꺼비가 받은 큰상과 같았도다.

평생을 마시고 먹었으되 죽과 밥만을 알았거늘

한술 뜨기도 전에 배 먼저 부르구나.

신랑의 소매엔 황률이 반되나 가득

手母가 合歡酒 따른 통엔 술이 가득

다들 사양치 마시고 드십시오.

이렇듯 큰상은 다시 얻기 어려우이...⁴⁰⁾

이 기록에 의하면 과일·조과·유밀과·떡 등의 다양한 찬품으로 구성된 큰상에는 수과련을 꽃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림 6>의 큰상과 『동상기』의 큰상은 물론 고임음식들로 구성된 것이며, 여기에 조화를 꽃은 것으로 보아 양자가 모두 궁중연회

39) 북→동→서→남이 좌석의 上席 순서이다.

40) 李能和, 『朝鮮女俗考』(金尙億 옮김)(동문선, 1990), 188~189쪽.

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적어도 정조 이후 구한말까지의 기간에는 궁중음식이 일반 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혼례 때의 큰상에는 보편적으로 조화를 꽂아 장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동상기』에는 신랑이 큰상을 받고 치른 연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수과련을 꽂은 큰상이 당시 사또어른 밥상과 같다는 것이며, 신랑에게 반되나 되는 황술을 연회 도중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당시 수과련 등을 꽂은 사또어른의 호화스런 밥상(아마도 연회일 경우라고 생각되지만)에서 양반의 연회문화를 유추할 수 있고, 큰상을 받고 치른 혼례 연향에서는 신랑에게 밤을 주는 것이 하나의 풍속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가례작의」에서 “요즈음 풍속에 또한 자리잡고 앉아 술을 마시고 나면 소년이 탁상의 밤을 집어 신랑에게 먹게 하는데, 이 또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바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아마 富貴多男을 기도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과련·목단국화 등으로 장식된 큰상은 신랑·신부가 먹는 상이 아니다. 흔히 ‘눈요기상’으로 불리는 이 상은 다만 看盤(장식상)의 역할을 하였다. 연회가 끝난 후 그 날 온 손님들에게 허물어 골고루 나누어주기도 하고, 신랑집에 갈 때 이바지 음식이 되었다. 일종의 飲福적 의미가 있는 상이다. <그림 6>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신랑·신부가 먹을 수 있는, 국수장국과 떡을 비롯하여 전유어 등의 술안주가 술과 함께 차려진 작은상이 제공되며, 이것을 ‘입매상’이라고 하였다.

<그림 6>에서는 함지박이나 놋동이 뜨는 커다란 목판이라고 생각되는 그릇에 떡을 담아 네 군데 진설하고 있다. 다분히 향연의 주 음식은 떡임을 강조한 듯한 이 상차림은 共食을 떡으로 두루 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속을 다지는 결혼 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41) 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례음식문화』(수학사), 1995.

42) 음식에 조화를 꽂는 것(床花)은 고려 궁중의례문화의 유풍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동상기』의 기록은 정조 이후 구한말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床花문화는 불교문화가 대중에게까지 크게 침투하고 있던 고려시대에 이미 대중에게 보급되었을 것이다. 상화는 밀교적 성격을 띤 불교문화의 일 부분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보, 「조선통신사 및 일본사신을 통해서 본 한일 간의 음식문화의 비교와, 대마도에서의 연회를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壽杯床果盤阿架床考」,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Vol. 14, No. 2(1999) 불 것.

신랑·신부가 신부집에서 받았던 큰상은, 于歸 후 신랑집에서의 見舅姑禮가 끝난 다음, 또 한 차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을의 젊은 부인들은 성장을 하고 접대자가 되어 신부를 소정의 자리에 앉힌 다음 산 같이 높게 고인 음식으로 진설된 큰상을 차린다. 많이 높게 고일수록 신부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 가능한 한 높게 고이게 되며, 이 큰상 역시 접대자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신부집으로의 이바지 음식이 되었다. 큰상을 차릴 때는 접대자에게도 각각 음식상을 받게 하여 共食하는 것이다.⁴³⁾

(2) 見舅姑禮

신랑과 신부가 큰상을 갖추고 신랑·신부의 待客과 함께 향응을 치른 다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于歸하여 현구고례를 올리는데, 우리나라의 현구고례 풍속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라에서는 “新婦之夕, 女先拜舅姑, 次郎拜大兄夫”⁴⁴⁾라고 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무엇을 폐백으로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라에서의 이러한 의례는 고려에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조선왕조의 半親迎에서는 현구고례 때 시부모의 좌석배치를 『주자가례』에 따라 동서에 마주보게 하거나⁴⁵⁾ 북쪽에 남향하여 나란히 앉도록 한 다음,⁴⁶⁾ 시아버지에게는 棗栗, 시어머니에게는 脰脩脯를 올렸다. 따라서 조율과 단수포를 폐백으로 사용하는 『의례』 「사혼례」의 예법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현구고례가 끝난 다음 시부모께 孝順을 나타내기 위하여 特豚을 갖추어 올리는 예를 饋舅姑禮라고 했는데, 특돈 한 마리 대신 신부집에서 가지고 온(현재의 이바지음식에 해당) 떡·나물·과일로 첫 번째 상, 신부가 직접 만든 밥·국·생선·고기 등으로 차려진 진지상을 두 번째 상으로 하여 두 상을 시부모가 받고 있다.⁴⁸⁾ 饋

43) 韓東龜, 앞의 책, 212쪽.

44) 「新羅傳」, 『北史』.

45) 辛應純, 『省齋集』; 黃泌秀, 『增補四禮便覽』(1900).

46) 丁若鏞, 『與猶堂全書』.

47) 辛應純, 『省齋集』.

48) 辛應純, 『省齋集』. 특돈 대신 풍속대로 떡·국·수대추·밤·생선·고기 등 6종류를 갖추어 대치할

舅姑禮는 盥饋禮라고도 하였다. 정약용은 관례 때의 사치풍조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盛饌 두 자에만 매달려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하여 남의 눈을 현혹시키고 가난함을 업신여겨 색시의 뜻을 오만하게 하니 이는 크게 어지러운 도이다.···마땅히 특돈 한 마리를···써야 하는데 어찌하여 마음대로 증감할 수 있겠는가···백성이 가난한 것은 분수를 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49)

례구고례 다음날 饗婦禮라 하여 시부모가 신부를 접대하여 1헌의 술을 내리고 古禮대로 시어머니는 서쪽 계단으로, 며느리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代를 전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⁰⁾

2. 조선왕조의 혼례음식

(1) 同牢宴

고려왕조를 이은 조선왕조는 정치·사상적으로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례 정비에 전력을 쏟았다. 성종 5년(1474)의 『國朝五禮儀』 완성과 성종 2년(1471) 성리학 학 婚嫁禮를 포함하는 『經國大典』의 완성으로 나라의 법체제를 정비하였다. 세종 원년(1419) 왕가의 자녀 혼인은 親迎禮를 따른다고 하는 敎示를 내린 것은⁵¹⁾ 혼례를 왕가부터 솔선 수범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국조오례의』에는 왕세자·왕자·왕녀·종친·문무관 1품 이하의 친영을 기본으로 하는 혼례의식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태종조부터 세종조 사이에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된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⁵²⁾ 그러나 궁중에서의 왕자·왕녀를 대상으로 한 친영의례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중종 7년(1512) 10월의 다음과 같은 교시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⁵³⁾

수 있음을 星湖는 제시하고 있다. 文玉杓 외, 앞의 책, 207쪽.

49) 위의 책, 208쪽.

50) 辛應純, 『省齋集』.

51) 『春官志』.

52) 『國朝五禮儀』.

조선의 풍속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 것을 정식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古禮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부터 왕자왕녀의 혼인은 모두 古制에 따라 행한다.

왕가례일 경우에는 『국조오례의』에 납채·납장·고기·책봉·冊命을 받는 의식·使者에게 명하여 왕비를 奉迎하는 의식·동뢰연·왕비가 백관의 하례를 받는 의식·전하가 백관과 회례하는 의식·왕비가 내명부와 외명부의 조회를 받는 의식을 포함하는 ‘왕비를 맞아들이는 의식’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종 20년(1525) 사자에게 명하여 왕비를 봉영하는 의식 대신에 왕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는 올바른 親迎禮를 고례에 준해 고찰토록 하여 문정왕후를 친영 장소로 정한 太平館에서 몸소 맞이하였다. 그러나 「의례」로서 정식으로 사문화된, ‘왕비를 맞아들이는 때 친영하는 의식’은 숙종 28년(1702)에 비로소 제정되었고 이것은 그 후 『國朝續五禮儀』에 첨부되었다.⁵⁴⁾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王의 혼례는 일반 서민의 半親迎과 달리 중종 이후 揀擇(선보기)·納采·納徵·告期·親迎·同牢·朝見 등으로 거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⁵⁵⁾

중국식 혼례의 흔적으로 보이는 왕가혼례에 대한 구체적 기록으로는 신라 神文王 3년(683)의 기록이 있다. 金欽運의 작은 딸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이다.⁵⁶⁾

첫째, 2월에 이찬과 파진찬을 보내 기일을 정하였다.

둘째, 대야찬을 보내 納采(부인으로 채택한 것을 나타내는 예물을 받아들이는 예)하게 하였는데, 이 때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수레, 쌀·술·기름·꿀·간장·된장·포·젓갈이 135 수레, 조(租)가 150수레였다.

셋째, 5월 7일에 이찬 등을 보내 책봉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넷째, 5월 7일 卯時(5시~7시)에 파진찬 등 30여 명을 보내 부인을 맞아오게 하였다.

53) 『春官志』.

54) 『國朝續五禮儀』.

55) 『儀禮』에서는 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의 6禮를 혼인의 중심의례로 하고 있고, 『朱子家禮』에서는 議婚·納采·納幣·親迎의 4禮로 하고 있다.

56)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68 ~ 169쪽.

이상의 내용을 조선왕조 혼례와 결부시킨다면, 첫째는 告期, 둘째는 納采와 納徵, 셋째는 왕비책봉, 넷째는 친영단계인 사자에게 명하여 왕비를 봉영하는 의식이 될 것이다. 조선왕조의 혼례의례와 완전히 똑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제도를 이어받은 고려왕가 혼례도 신라의 그것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鄭道傳이 지적한 고려조에서의 과도한 納采 폐해가 그 한 예이지만,⁵⁷⁾ 귀족계급들도 納采에서는 반드시 禮緞(예페로 보내는 비단)을 사용하였다.⁵⁸⁾ 옥책을 발부하는 의식·책문을 받는 의식·연회·백관들이 축하하는 의식·왕이 백관과 회례하는 의식을 포함하는 『고려사』의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은 『국조오례의』의 책봉·책명을 받는 의식·왕비가 백관의 하례를 받는 의식·전하가 백관과 회례하는 의식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⁵⁹⁾

신라 신문왕 때의 혼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납채·사자에게 명하여 왕비를 봉영하는 의식이 『고려사』에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고려왕의 가례는 신라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毅宗(1147~1170)조에 왕자·왕녀의 혼례식에 관한 禮文을 상정하였는데, 그것은 유교식 六禮에 준하는 것이었다.⁶⁰⁾

고려왕의 혼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혼례 때 연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고려사』에 기록된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의 연회(會賓)를 통하여 유추해 보기로 한다.

陳設과 果案 설치

進茶

헌작과 行酒

제1잔 樂

제2잔 初味 악

제3잔 二味 악

제4잔 三味 악

57) 韓東龜, 앞의 책, 150쪽.

58) 徐兢, 「雜俗一」, 『宣和奉使高麗圖經』.

59) 『高麗史』 卷65.

60) 韓東龜, 앞의 책, 150쪽.

제5잔 四味 약

押花使⁶¹⁾가 왕이 하사한 꽃을 勸花使⁶²⁾에게 주고, 권화사는 이것을 받아 책사·부사·독책관·연반 등의 순서로 꽃을 꽃아줌
권화사가 왕이 하사한 술을 권합(腸酒花食)

제6잔 五味 약

제7잔 六味 약

제8잔 七味 약

제9잔 八味 약⁶³⁾

휴식

궁정에서 별도로 꽃과 술을 보냄. 迎仙樂이 시작됨

進茶, 行酒 등을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함

再拜 후 또 재배

賜祿)

퇴출

造花·油蜜果로 구성된 果案·茶·술·味數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이상의 연향은 혼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고려왕실 연향의 일관된 흐름이다.⁶⁴⁾ 忠烈王 22년(1296) 세자가 백마 81필을 원 황제에게 폐백으로 바치고 晉王 甘麻刺의 딸 寶塔實憐公主(충선왕비가 된 계국대장공주)를 아내로 맞아 혼례식을 거행할 때 본국의 油蜜果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은⁶⁵⁾ 원나라에까지 가서 유밀과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果案에 유밀과를 사용하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음을 보여준다. 毅宗 11년(1157)에는 10월에 대부시의 油蜜이 다 없어질 정도였으므로⁶⁶⁾ 급기야 明宗 22년(1192)에는 다음과 같은 왕명이 내려졌다.⁶⁷⁾

61) 꽃 운반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2) 궁중에 잔치나 의식이 있을 때 勸花(참석하는 사람들이 꽃을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조화)를 담당하는 입시 벼슬을 가리킨다.

63) 初味에서부터 八味까지를 味數라고도 한다. 술의 현수 및 行酒에 따라 점진적으로 배선되는 시계열형 상차림이다.

64) 김상보, 앞의 논문, 124쪽.

65)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22年.

66) 『高麗史節要』, 卷11, 毅宗 11年.

67) 『高麗史節要』, 卷13, 明宗 22年.

다만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낭비함이 한이 없다. 지금부터는 유밀과를 쓰지 말고 과일로 대신하되, 작은 잔치에는 세 그릇, 중간 잔치에는 다섯 그릇, 큰잔치에는 아홉 그릇을 초과하지 말며, 찬도 역시 세 가지를 초과하지 않게 하되 부득이하여 더 쓰게 될 경우에는脯와 젓갈(醢)을 번갈아 들어 정식으로 삼을 것이다.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용된 유밀과만큼이나, 비단으로 만든 造花 역시 연회 때에는 사치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므로 왕명으로 금지가 된 것이다. 충열왕 22년(1296) 5월에 왕이 唐玄宗의 밤놀이하는 그림을 보고 연회날에 國驢庫의 엷은 비단 20필로 된 조화로 꽃계단을 만들었다.⁶⁸⁾ 이러한 극도의 사치로公私의 연회에 絲花(비단으로 만든 조화로 음식에 꽂는 꽃)를 사용하는 것마저 금하게 된 것이다.⁶⁹⁾

조화와 유밀과로 구성된 果案, 차, 술, 미수로 차려진 고려왕조의 연회구성은 그대로 조선왕조 연회로 이어졌다. <그림 8>부터 <그림 13>까지는 肅宗 7년(1681)에 있었던 숙종 혼례 때의 同牢宴과, 朝見禮 때 올렸던 음식 상차림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⁷⁰⁾ <그림 8>의 동퇴연상·우협상·좌협상을 同牢宴果床이라고도 지칭하였으며 看盤적 성격의 상이었다.⁷¹⁾ 동퇴연 과상에 꽂은 絲花를 나타낸 것이 <그림 9>인데 大鳳·中鳳·小鳳·孔雀·白鶴·羅花草蟲과 같은 불교의 吉祥花⁷²⁾가 동퇴연상·우협상·좌협상의 유밀과에 꽂혀져 상화로 장식되고 있다.

동퇴연과상에 차려진 饌品은 紅尔條·松古尔條·油沙尔條·白散子·紅散子·각종 味子兒류·雲氷·添水·中朴桂·紅望口消·油沙望口消·白茶食·全丹餅·대추·황율·갓·꽃감·비자·개암 등 油蜜果와 과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유밀과는 밀가루(중박계·산자류·마조류·적미자아·백미자아·운빙·망구소류·백다식·전단병·침수)를 주재료로 한 것과, 찹쌀가루(송고마조·울미자아·송고미자아·유사미자아)를 주재료로 한 것으로 분류되며, 꿀과 참기름을 사용하여

68)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22年.

69) 『高麗史節要』, 卷23, 忠宣王 2年.

70) 『嘉禮都監儀軌』(1681).

71) 김상보, 앞의 책(1995), 91쪽.

72) 허균, 앞의 책, 112~143쪽.

<그림 10> 왕가례시 동뢰연 때의 신랑·신부 상차림 배치도(『嘉禮都監儀軌』)

만들었다.⁷³⁾

동뢰연과상의 상차림을 포함하는 <그림 8>에서 <그림 13>까지의 혼례연 상차림 구조는 비록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1906년 황태자 가례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⁷⁴⁾ 상화로 장식된 유밀과로 차려진 果床(고려 때의 果案에 해당)의 역사는 실로

73) 김상보, 앞의 책(1995), 183 ~ 193쪽.

74) 『嘉禮都監儀軌』(1906).

오랫동안 궁중연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혼례 때 조선왕조의 엄격한 유교적 궁중 예법 아래에서도 <그림 1>과 같은 『의례』 「사혼례」에서 보여주는 동퇴연 상차림이 적용되지 못하고, <그림 8>의 동회연과상이 적용된 것은 관행이 규범을 앞서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 동퇴연과상은 민가에도 영향을 미쳐 앞의 <그림 6>처럼 목단화와 국화로 된 상화를 꽂은 큰상에서 나타나고 있으며,⁷⁵⁾ <그림 3>과 <그림 4>의 과일과 나물로 구성된 동퇴연 상차림 역시 고려에서부터 이어온, 관행을 따른 동퇴연 상차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밀과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유밀과 사용을 왕명으로 금하기도 한 고려왕조에 이어, 조선왕조도 혼례에서 동퇴연과상과 신부 부모에게 보내는 예물(<그림 12>)에서 과도한 유밀과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 동퇴연과상을 아름답게 차리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이 고려왕조에 이어진 조선왕조의 문화이다.

그러면 看盤적 성격을 갖고 있던 동퇴연과상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고려왕조 연향 때 絲花로 장식된 果案을 차려놓고 베푼 다음과 같은 唐樂을 통하여 그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⁷⁶⁾

우리는 봉래섬에서 용모 가다듬고 대궐로 축하드리러 내려왔습니다.…신선의 수명은 영원한 것, 당신께 드립니다 만수무강을…봉래산에 살다가 연꽃술에 내려왔더니, 성상의 덕화에 감동되어 노래와 춤으로 잠시나마 위안을 드리려 합니다…악이 끝나려 하니 배례하고 화려한 자리를 하직합니다. 선녀들이 돌아가고 저 구름을 타고 떠납니다. (…我從蓬島整客姿, 來降賀丹墀… 神仙壽算遠無期, 獻君壽萬千斯… [獻仙桃] …住在蓬萊下, 生蓮藥, 有感君王之德化, 來呈歌舞之權娛…雅樂將終, 拜辭華席, 仙輶欲返, 遙指雲程… [蓮花臺])

75) 목단화와 국화 역시 불교의 길상화이다. 허균, 앞의 책, 117쪽. 고려왕조에서는 목단을 蜜蠟에 채색하여 꽃을 만들기도 했다.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 15年. 조선왕조에서 연향 때 사용하는 床花 종류로는 복숭아꽃, 목단화, 국화, 가지화, 유자화, 복분자화, 포도화, 감꽃, 오이꽃, 연꽃, 월계화 등이 있었다. 김상보, 앞의 책(1995), 276~277쪽.

76) 『高麗史』, 卷71.

이상의 「헌선도」와 「연화대」의 가사내용은, 봉래산(극락정토)⁷⁷⁾에 살다가 성상을 위로하기 위하여 꽃에 내려와서 만수무강을 주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퇴연과상에서의 床花의 용도는, 神(제석, 신선) 또는 신의 使者가 내려와 머물도록 마련된 곳이며, 동퇴연과상 자체는 신을 위한 음식상이다. 따라서 看盤(장식상)적 성격의 ‘보기만 하는 상’은 만수무강을 얻고자 하는 신을 위한 상이었으며, 이 상의 음식은 행사가 끝난 후 飲福으로 쓰임으로써 복을 받고자 했다고 판단된다.

『의례』 「사혼례」에서의 동퇴연 상차림이 祖上神을 위한 것이라면, 조선왕조의 동퇴연과반은 봉래산의 신을 위한 것이었다. 고려왕조를 이은 조선왕조는 혼례 때 상차림을 봉래산의 신을 위한 상과 조상신을 위한 상으로 엄격히 구분하였다. 신랑·신부가 교배례를 할 때 신랑·신부 앞에 차렸던 찬안상 및 小牢(양·돼지)를 갖추어 차린다고 하는 古禮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大膳과 小膳은 조상신을 위한 상으로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찬안상(면협상)·대산·소선은 습쫄禮 때 조상신의 강림을 위한 것이 주요 용도였고, 동퇴연과반은 만수무강을 얻고자 하는 봉래산의 신을 위한 상(관객의 입장에서는 看盤적 성격의 상)이었던 것이다. 봉래산의 신과 조상신 양자로부터 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림 10>과 같은 상차림의 구성을 낳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림 10>은 儒佛仙이 공존하는 세상의 표현이다.

다음은 고려왕조 연회 때 술안주로 올랐던 미수가 조선왕조 혼례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1>에서 나타나고 있는 味數 가운데 初味·二味·三味 부분은 同牢宴 때 제1헌·초미, 제2헌·이미, 제3헌·삼미로 술이 올려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시계열형 배선에 의하여 제공되는 술안주였다. 이 때는 제1잔과 제2잔에서와 달리 제3잔은 습쫄을 사용하였다.

77) 蓬萊山은 가상으로 이름지은 三神山이다. 蓬島라고도 한다. 여기는 극락정토와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황금과 白銀으로 만든 궁궐이 있다고도 한다.

<그림 12> 妃 부모에게 보내는 예물 가운데 음식부분(『嘉禮都監儀軌』)

『의례』 「사혼례」와 『국조오례의』에 나타난 동퇴연에서의 배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의례』 「사혼례」		『국조오례의』		
제1잔	祭酒	입을 청결하게 하고 먹은 음식을 조화하기 위하여 권하는 술	술안주:간적	祭酒	먹은 음식을 조화하기 위한 술	술안주:초미
제2잔	제주	먹은 음식을 조화하기 위하여 권하는 술	술안주:x		먹은 음식을 조화하기 위한 술	술안주:이미
제3잔	제주	습쫄酒	술안주:x		습쫄酒	술안주:삼미

『의례』 「사혼례」에서는 제1잔·제2잔·제3잔 모두 제사하여 마시는데 반하여 『국조오례의』에서는 제1잔만 祭酒가 되고 있고, 전자는 술안주로 肝炙이 제1잔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나, 『국조오례의』에서는 술안주로 제1잔·제2잔·제3잔 모두 제공되고 있다. 합근주와 석 잔의 술 부분은 의례의 규범대로 적용한 것이라면, 제1잔에서의 췌주, 술안주로 제공된 초미·이미·삼미 부분은 관행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술안주로 시계열형으로 배선된 味數가 민가 연회에서 나타난 것이 ‘입매상’이라고 지칭되는 상차림일 것이다. 다분히 궁중음식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그림

6>의 큰상과 함께, 민가 혼례음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궁중음식문화의 흔적이다.

(2) 見舅姑禮

『의례』 「사혼례」에서 현구고례 때 예물로 시부모에게 올린 殿脩脯와 棗栗이 궁중의례에도 적용되고 있다(<그림 13>). 『국조오례의』의 「嬪朝見」에 의하면 현구고례 때 시아버지인 왕좌는 內殿 동쪽에 시어머니인 왕비좌는 내전 서쪽에 각각 마주 보도록 설치하고 있다. 이는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다.

*왕가례에서는 시아버지가 없기 때문에(왕이 곧 남편) 조술반이 없음

<그림 13> 妃가 兩慈殿에게 朝見禮할 때 올리는 果盤과 殿脩脯盤(『嘉禮都監儀軌』)

IV. 맺음말

단군의 출생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건국신화에는, 쑥 한줌과 마늘 20개가 인간으로 재생하여 혼인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중요한 약용식물로 등장하고 있다. 곰과 범이 쑥과 마늘을 三七日 동안 共食하면서, 이를 통하여 비로소 인간이 되어 결혼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미숙한 상태의 존재(곰)가 共食 기간이 지난 다음 완

전한 존재(인간)가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⁷⁸⁾

이상의 신화에서 쭉과 마늘이 갖는 의미는 삼칠일 동안의 共食 기간이 다음 단계를 위한 배태기로 작용하고, 이후 새로운 인간이라는 사회적 세계에 진입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단군 신화는 당시의 冠禮와 昏禮에 관련된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共食은 성인이 되는 단계와 결혼 단계 모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곰과 범이 共食한 쭉과 마늘은 神雉(神人인 桓雉)이 내려준 신령스러운 약초로서 靈艾와 靈蒜이다. 共食의 주 내용물은 신이 내려준 음식이며,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신의 축복 아래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웅이 내려준 쭉과 마늘은 곧 신령이 깃든 음식이다. 이들 음식을 飲福이라는 과정을 거쳐 섭취한 후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飲福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이 되는 새로운 인간으로 재생하는 『의례』 「사혼례」에서의 同牢宴 또한 단군 출생과 관련된 건국신화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土 혼례이지만 기쁜 행사이기 때문에 大夫의 예에 근거하여 차려진 6豆(黍稷·滫醬·菹醢), 3鼎(豚腊·魚)은 오른쪽 절반은 신랑의 것, 왼쪽 절반은 신부의 것으로 한 特豚을 중심으로 하여 天時의 추이에 따라 음과 양을 조화시켜 차린 음식이다. 6두 3정으로 차려진 『의례』 「사혼례」에서의 동뢰연 상차림은 음복飲福을 통하여 조상신으로부터 복을 받아 성인의 도를 갖춘 신랑과 婦順의 덕이 준비되어 있는, 능력을 갖춘 신부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재생함과 동시에 신랑과 신부가 합체가 되고 같은 신분이 되게 하는 의례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특돈인 牲肉을 먹고 습쥘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는 의례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결합을 완성시키고 있다.

철저한 제사와 음복의례를 행하는 술 석 잔의 杯事 이후, 다음날 신부가 시부모에게 폐백으로 올리는 棗栗과 臍脩脯는 『의례』가 쓰여졌던 당시 윗사람을 처음 볼 때 올린 婦人의 선물 물목이었다. 조율은 음성의 식물, 단수포는 양성의 식물로서 음과 양이 화합하는 천시의 법칙에 따라 시아버지에게는 음성의 조율을, 시어머니에게는 양성의 단수포를 적용시킨 것이다.

脯, 脩, 대추밤개암탕자 등과 같이 당시 부인들이 선물로 사용하 물목 가운데

78) 이가원, 『삼국유사신역』(태학사, 1990), 46~47쪽.

데 곧이 대추와 밤, 단수포를 시부모에게 드리는 예물로 채택한 것은 시아버지에게는 ‘공손하게 갖추어 진심 어린 마음을 많이 드린다’, 시어머니에게는 ‘공경하고 노력하여 배우고 익히며 시어머니의 장수를 빌어 올린다’는 의미가 棗栗 暇脩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처가살이 혼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반도의 일반 민중 혼속은 共飲共食이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행사였으며, 공식으로 가족이 되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사상은 고려왕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부부가 동퇴연을 받았고 이 때 行三杯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獨座라고 했다.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의 강화노선에 부합하는 도덕적 윤리관을 확립하고, 의례를 정비한 조선왕조에서 채택한 『주자가례』를 근거로 한 시집살이 혼이 명종조 이후 半親觀으로 정착됨에 따라, 혼례 중심 행사는 여전히 관행대로 신부집에서 행해졌다. 이 때 차리는 음식상은 동퇴연상(초례상), 큰상, 입매상(小床), 주연상 등이 있었고 이밖에 封采떡 등이 있었다.

유가의 학풍을 이어 받은 선비집인 경우, 신부집에서 차려진 동퇴연상은 『의례』 「사혼례」에서 나타난 특돈을 중심으로 차린 상차림과 달리, 과일·나물·합근주로 구성된 신랑·신부가 각각 독상을 받는 형태로 차려진 것이었다. 이 때 합근주를 제외한 과일·나물은 고려에서 이어진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서민의 동퇴연은 신부집 문 앞에 松竹을 세우고, 실 또는 대청 아니면 마당에 교배석을 마련한 다음, 밤·대추 등의 과일, 술주전자·술잔·합근을 진설한 하나의 고족상을 한 가운데 놓는데 이를 동퇴상이라고 했다. 동퇴상 양 끝에는 청색 보자기와 홍색 보자기에 몸이 묶인 채 쌓여 있는 닭 두 마리를 놓았다.

동퇴연이 끝난 후 後行待客과 더불어 연향이 있었다. 이 때 신랑과 신부는 신랑집에 갈 때 이바지음식 등의 飲福으로 쓰인 看盤적 성격이 있는 높게 고인 음식에 床花로 장식된 큰상을 받았다. 큰상과는 별도로 신랑·신부에게는 국수장국과 떡을 비롯하여 전유어 등의 술안주가 술과 함께 차려진 음식상이 제공되었는데, 이를 입매상이라고 했다.

한편 조선왕조에서의 왕의 혼례는 일반 서민의 반친영과 달리, 중종 이후 간택·납채·납장·고기·왕비책봉·친영·동퇴·조현 등으로 거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왕가 혼례에서의 동퇴연 상차림은 고려왕가의 유풍으로 판단되는 유밀과 등의

고임음식에 絲花鳳을 꽂은 看盤적 성격의 상차림인 동퇴연과상 외에 대선, 소선, 신랑신부가 교배례를 할 때 신랑신부 앞에 차리는 상인 찬안상(面俠床), 味數로 구성되었다. 미수 역시 동퇴연 때 술 3현의 술안주로, 제1현·초미, 제2현·이미, 제3현·삼미로 술이 올려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시계열형 배선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의례』 「사혼례」에서의 동퇴연 상차림이 조상신을 위한 것이라면 동퇴연과상은 봉래산의 신을 위한 것으로, 고려왕조를 이은 조선왕조는 혼례 때 봉래산의 신을 위한 상과 조상신을 위한 상(찬안상, 대선, 소선)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봉래산의 신과 조상신 양자로부터 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동퇴연과상과 찬안상·대선·소선이 차려진 것이며, 조선왕조 왕가의 혼례 상차림은 유불선이 공존하는 세상의 표현이다.

비록 왕가에서 친영을 채택하였다고는 하나, 합근주와 술 3현 이외의 동퇴연과상과 미수 등의 채택은 규범보다는 관행을 따른 것이다. 왕가 혼례 상차림은 일반 민중의 혼례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동퇴연과상은 큰상, 미수는 입매상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국조오례의』에서의 「빈조현」에서는 현구고례 때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시아버지인 왕좌는 내전의 동쪽에, 시어머니인 왕비좌는 내전 서쪽에 각각 마주 보도록 하여 설치한 후 『의례』 「사혼례」의 예물이기도 한 조율과 단수포를 예물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사대부와 서민의 혼례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 『嘉禮都監儀軌』, 1681.
- 『嘉禮都監儀軌』, 1802.
- 『嘉禮都監儀軌』, 1906.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國朝五禮儀』.
- 『國朝續五禮儀』.
- 『北史』.

『三國志』.

『禮記』.

『增補文獻備考』.

『春官志』.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辛應純, 『省齋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黃必秀, 『懸吐註解 四禮便覽』, 1900.

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례음식문화』, 서울: 수학사, 1995.

김상보, 「조선통신사 및 일본사신을 통해서 본 한일간의 음식문화의 비교와 대마도에서의 연회를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壽杯床果盤阿架床 考」,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14 No. 2, 1999.

김상보,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 서울: 수학사, 1996.

渡辺昭宏, 한경수 역, 『불교사의 전개』, 서울: 불교시대사, 1992.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오강원 역주, 『儀禮』, 성남: 청계, 2000.

이가원, 『삼국유사신역』, 서울: 태학사, 1990.

李能和, 『朝鮮女俗考』, 서울: 동문선, 1990.

장철수, 『韓國의 冠婚喪祭』, 서울: 집문당, 1995.

정구복 외, 『역주삼국사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金尙寶,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的饗宴」,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19卷 1号, 1994.

張承斗, 「李朝社會の婚姻儀式に就て」, 『朝鮮』, 1939.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6.

池田末利 譯註, 『儀禮 I』,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昭和48.

韓東龜, 『韓國의 冠婚葬祭』, 東京: 國書刊行會, 1974.

주요어

혼례음식, 『의례』 「혼사례」, 동리연, 현구고례, 공음공식, 단군신화